



2021년

#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서울가정법원

#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모합산 소득	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만 원
	199만 원	299만 원	399만 원	499만 원	599만 원	699만 원	799만 원	899만 원	999만 원	1,199만 원	이상
자녀 만 나이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0~2세	621,000 264,000~686,000	752,000 687,000~848,000	945,000 849,000~1,021,000	1,098,000 1,022,000~1,171,000	1,245,000 1,172,000~1,323,000	1,401,000 1,324,000~1,491,000	1,582,000 1,492,000~1,685,000	1,789,000 1,686,000~1,893,000	1,997,000 1,894,000~2,046,000	2,095,000 2,047,000~2,151,000	2,207,000 2,152,000 이상
3~5세	631,000 268,000~695,000	759,000 696,000~854,000	949,000 855,000~1,031,000	1,113,000 1,032,000~1,189,000	1,266,000 1,190,000~1,344,000	1,422,000 1,345,000~1,510,000	1,598,000 1,511,000~1,702,000	1,807,000 1,703,000~1,912,000	2,017,000 1,913,000~2,066,000	2,116,000 2,067,000~2,180,000	2,245,000 2,181,000 이상
6~8세	648,000 272,000~707,000	767,000 708,000~863,000	959,000 864,000~1,049,000	1,140,000 1,050,000~1,216,000	1,292,000 1,217,000~1,385,000	1,479,000 1,386,000~1,546,000	1,614,000 1,547,000~1,732,000	1,850,000 1,733,000~1,957,000	2,065,000 1,958,000~2,101,000	2,137,000 2,102,000~2,224,000	2,312,000 2,225,000 이상
9~11세	667,000 281,000~724,000	782,000 725,000~885,000	988,000 886,000~1,075,000	1,163,000 1,076,000~1,240,000	1,318,000 1,241,000~1,406,000	1,494,000 1,407,000~1,562,000	1,630,000 1,563,000~1,758,000	1,887,000 1,759,000~2,012,000	2,137,000 2,013,000~2,158,000	2,180,000 2,159,000~2,292,000	2,405,000 2,293,000 이상
12~14세	679,000 295,000~734,000	790,000 735,000~894,000	998,000 895,000~1,139,000	1,280,000 1,140,000~1,351,000	1,423,000 1,352,000~1,510,000	1,598,000 1,511,000~1,654,000	1,711,000 1,655,000~1,847,000	1,984,000 1,848,000~2,071,000	2,159,000 2,072,000~2,191,000	2,223,000 2,192,000~2,349,000	2,476,000 2,350,000 이상
15~18세	703,000 319,000~830,000	957,000 831,000~1,092,000	1,227,000 1,093,000~1,314,000	1,402,000 1,315,000~1,503,000	1,604,000 1,504,000~1,699,000	1,794,000 1,700,000~1,879,000	1,964,000 1,880,000~2,063,000	2,163,000 2,064,000~2,204,000	2,246,000 2,205,000~2,393,000	2,540,000 2,394,000~2,711,000	2,883,000 2,712,000 이상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 기본원칙

-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함



## 산정기준표 설명

- 1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 2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 3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 1)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2)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3)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4) 고액의 치료비
  - 5)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 가족 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인 4인 가구
-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 합산소득 450만 원

부모합산 소득	0~199만 원		200~299만 원		300~399만 원		400~499만 원		500~599만 원		600~699만 원		700~799만 원		800~899만 원		900~999만 원		1,000~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자녀 만 나이																						
0~2세	621,000	264,000~686,000	752,000	687,000~848,000	945,000	849,000~1,021,000	1,178,000	1,171,000~1,185,000	1,245,000	1,172,000~1,323,000	1,401,000	1,324,000~1,491,000	1,582,000	1,492,000~1,685,000	1,789,000	1,686,000~1,893,000	1,997,000	1,894,000~2,046,000	2,095,000	2,047,000~2,151,000	2,207,000	2,152,000 이상
3~5세	631,000	268,000~695,000	759,000	696,000~854,000	949,000	855,000~1,031,000	1,113,000	1,102,000~1,189,000	1,266,000	1,190,000~1,345,000	1,422,000	1,345,000~1,511,000	1,598,000	1,511,000~1,702,000	1,807,000	1,703,000~1,912,000	2,017,000	1,913,000~2,066,000	2,116,000	2,067,000~2,180,000	2,245,000	2,181,000 이상
6~8세	667,000	272,000~707,000	782,000	708,000~863,000	988,000	864,000~1,049,000	1,140,000	1,050,000~1,216,000	1,292,000	1,217,000~1,385,000	1,479,000	1,386,000~1,546,000	1,614,000	1,547,000~1,732,000	1,850,000	1,733,000~1,957,000	2,065,000	1,958,000~2,101,000	2,137,000	2,102,000~2,224,000	2,312,000	2,225,000 이상
9~11세	667,000	281,000~724,000	782,000	725,000~885,000	988,000	886,000~1,075,000	1,163,000	1,076,000~1,240,000	1,318,000	1,241,000~1,406,000	1,494,000	1,407,000~1,562,000	1,630,000	1,563,000~1,758,000	1,887,000	1,759,000~2,012,000	2,137,000	2,013,000~2,158,000	2,180,000	2,159,000~2,292,000	2,405,000	2,293,000 이상
12~14세	679,000	295,000~734,000	790,000	735,000~894,000	998,000	895,000~1,139,000	1,280,000	1,140,000~1,351,000	1,423,000	1,352,000~1,511,000	1,598,000	1,511,000~1,654,000	1,711,000	1,655,000~1,847,000	1,984,000	1,848,000~2,071,000	2,159,000	2,072,000~2,191,000	2,223,000	2,192,000~2,349,000	2,476,000	2,350,000 이상
15~18세	679,000	319,000~830,000	790,000	831,000~1,092,000	998,000	1,093,000~1,314,000	1,402,000	1,315,000~1,503,000	1,604,000	1,504,000~1,699,000	1,794,000	1,700,000~1,879,000	1,964,000	1,880,000~2,063,000	2,163,000	2,064,000~2,204,000	2,246,000	2,205,000~2,393,000	2,540,000	2,394,000~2,711,000	2,883,000	2,712,000 이상

아들의 표준양육비

딸의 표준양육비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 1. 표준양육비 결정

- 가. 딸의 표준양육비 : 1,402,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 나.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40,000원  
(자녀 나이 6~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 다.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42,000원(= 1,402,000원 + 1,140,000원)**

## 2.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42,000원

##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 270만 원 / (180만 원+270만 원))

##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25,200원(= 2,542,000원 × 60%)**



2021년

#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은 2012. 5. 3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래 2014. 5. 30.과 2017. 11. 17. 두 차례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 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개정된 지 4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 동안 물가 및 국민 소득의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의 개선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사정들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20년부터 기존 비상설 양육비위원회를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 산하 '양육비산정기준연구분과'로 상설화하여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을 연구해왔고, 공청회 등을 통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적정하고 내실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1. 12. 22. 공표하고 2022. 3.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은 분담한다는 기존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은 유지하였습니다. 여기에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양육비 액수를 증액하였고,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 중 고소득층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였으며, 양육비 가중 및 감산 요소를 보완하여 더욱 내실 있는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적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쟁점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이 해설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앞으로도 사회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좀 더 나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해설서를 통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보다 쉽고 폭넓게 활용됨으로써 내실 있고 적절한 양육비가 산정되기를 기대하며, 더 나아가 미성년 자녀들의 복지 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 12.

서울가정법원장 김 인 검

# 목 차

<b>I</b>	<b>서론</b> .....	1
	1.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	1
	2. 양육비 산정기준의 근거와 필요성 .....	1
<b>II</b>	<b>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제정 및 개정 경과</b> .....	3
	1. 200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3
	2.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4
	가. 제정 경과 .....	4
	나. 의의 .....	5
	3.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6
	가. 제정 경과 .....	6
	나.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특징 .....	6
	4.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7
	가. 제정 경과 .....	7
	나.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특징 .....	8
	5.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9
	가. 논의의 배경 .....	9

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작업 .....	11
--------------------------------	----

### Ⅲ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1.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 .....	14
2. 표준양육비 산정의 기초자료 .....	14
가.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및 2019년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	14
나. 2020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및 지급기준 .....	15
3.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달라진 사항 .....	16
가.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의 조정 .....	16
나. 자녀의 나이 구간 조정 .....	16
다.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표의 추가 .....	17
라. 양육비의 증가 .....	17
마. 가산·감산 요소의 수정 .....	17
4.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	17
가. 가구의 소득 구간 .....	17
나. 자녀의 나이 구간 .....	18
다. 양육자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녀 1인당 양육비 .....	18
라. 최저양육비 .....	19
마. 가산·감산 요소의 확정 .....	19
5. 가산·감산 요소 .....	19
가. 재산상황 .....	19
나. 자녀 수 .....	19
다. 자녀의 거주지역 .....	20



라.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20
마.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인 경우)	20
바.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21
사. 기타	21

#### IV 양육비 산정기준표 사용법 22

1. 양육비 산정절차 흐름도	22
2. 양육비 산정 방법	22
가. 표준양육비 결정	22
나. 양육비 총액 확정	24
다.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24
라.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24
마. 부모 일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	24
3. 예시	25

##### ■ 사례 1 ■

가. 표준양육비 결정	25
나. 양육비 총액 확정	26
다.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26
라.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26

##### ■ 사례 2 ■

가. 표준양육비 결정	27
나. 양육비 총액 확정	27
다.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27
라.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27

## V

##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한계와 적용상 유의사항 ..... 28

1.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한계 ..... 28
2. 적용상 유의사항 ..... 28
  - 가. 과거 양육비 ..... 28
  - 나. 양육비 판결, 심판이 이미 있었던 경우 ..... 29
  - 다. 나이 구간에 따른 양육비 산정 여부 ..... 29

## 표 차례

[표 1] 200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3
[표 2] 2012년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도시 월평균 .....	4
[표 3] 2012년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농어촌 월평균 .....	5
[표 4]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6
[표 5]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8
[표 6]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13
[표6-1]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비율) .....	13
[표 7]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한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	23



#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 I. 서론

## 1.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sup>1)</sup>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것이므로<sup>2)</sup>,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2. 양육비 산정기준의 근거와 필요성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비를 비롯하여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837조, 제843조).

민법은 위와 같이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에 참작해야 할 요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실심 법원은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양육비 액수를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양육비 액수에 관한 재량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서,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기 전에는 양육비를 청구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양육비 청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도 적정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현실에 맞는 적정한 양육비 액수를 정하고 나아가 양육비 산정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2012. 2. 1. 법률 제11291호로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제17조의3(자녀양육비 이행지원)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2014. 3. 24. 법률 제12532호로 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

1)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민법 제4조). 이 해설서에 기재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이다.  
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므2068(본소), 2010므2075(반소) 판결 참고.

관한 법률이 제5조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는 것과 함께 제6조에서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두어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II.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제정 및 개정 경과

### 1. 200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실무상 일관되지 못한 기준을 가지고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서울가정법원은 2007년경 ‘위자료 및 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모임’을 발족하여 객관적인 통계에 근거한 양육비 산정기준 마련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발간한 ‘2006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토대로 2007. 11. 30. 아래와 같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마련하였다.

[표 1] 200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연령 소득		199만 원 이하	200~ 299만원	300~ 399만원	400~ 499만원	500만 원 이상
		0~2세	기본 양육비	429,000	545,000	629,000
	자녀 개별비용	213,000	268,000	300,000	407,000	546,000
3~5세	기본 양육비	510,000	647,000	748,000	994,000	1,429,000
	자녀 개별비용	308,000	387,000	437,000	588,000	789,000
6~11세	기본 양육비	537,000	682,000	785,000	1,047,000	1,505,000
	자녀 개별비용	339,000	426,000	476,000	647,000	868,000
12~14세	기본 양육비	590,000	750,000	870,000	1,151,000	1,655,000
	자녀 개별비용	386,000	485,000	543,000	737,000	989,000
15~17세	기본 양육비	681,000	866,000	998,000	1,329,000	1,911,000
	자녀 개별비용	471,000	592,000	666,000	899,000	1,206,000
18~20세	기본 양육비	832,000	1,057,000	1,222,000	1,622,000	2,332,000
	자녀 개별비용	596,000	749,000	838,000	1,138,000	1,527,000



그러나 200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실무적인 검토가 미흡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못하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되었다.

## 2.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가. 제정 경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12. 1. 4. 제1기 양육비위원회를 발족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조사한 2009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2. 5. 30. 아래와 같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하여 공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무적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소득 구간을 600~699만 원, 7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거주지역(도시 및 농어촌)과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 2012년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도시 월평균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 합산 소득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b>45.2</b> (18.0~52.5)	<b>59.8</b> (52.6~66.3)	<b>72.8</b> (66.4~81.8)	<b>90.8</b> (81.9~95.9)	<b>101.1</b> (96.0~105.1)	<b>109.1</b> (105.2~110.0)	<b>110.9</b> (110.1~∞)
3~5세	<b>48.2</b> (21.3~56.9)	<b>65.6</b> (57.0~75.9)	<b>86.2</b> (76.0~94.3)	<b>102.4</b> (94.4~106.8)	<b>111.2</b> (106.9~116.5)	<b>121.8</b> (116.6~135.2)	<b>148.6</b> (135.3~∞)
6~11세	<b>47.2</b> (16.5~57.6)	<b>68.0</b> (57.7~77.1)	<b>86.2</b> (77.2~92.7)	<b>99.2</b> (92.8~109.0)	<b>118.8</b> (109.1~124.7)	<b>130.6</b> (124.8~139.9)	<b>149.3</b> (140.0~∞)
12~14세	<b>49.9</b> (28.1~62.0)	<b>74.2</b> (62.1~81.0)	<b>87.8</b> (81.1~98.0)	<b>108.5</b> (98.1~118.1)	<b>127.7</b> (118.2~136.7)	<b>145.8</b> (136.8~158.1)	<b>170.5</b> (158.2~∞)
15~17세	<b>57.6</b> (30.7~69.0)	<b>80.4</b> (69.1~90.3)	<b>100.3</b> (90.4~111.1)	<b>121.9</b> (111.2~134.0)	<b>146.1</b> (134.1~157.6)	<b>169.2</b> (157.7~181.4)	<b>193.6</b> (181.5~∞)
18~20세	<b>86.3</b> (28.2~94.7)	<b>103.2</b> (94.8~114.1)	<b>125.0</b> (114.2~133.9)	<b>142.9</b> (134.0~151.8)	<b>160.7</b> (151.9~179.0)	<b>197.3</b> (179.1~197.5)	<b>197.8</b> (197.6~∞)

※ 양육자녀 1인 가구 기준

[표 3] 2012년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농어촌 월평균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 합산 소득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b>38.5</b> (15.3~44.7)	<b>51.0</b> (44.8~56.5)	<b>62.1</b> (56.6~69.7)	<b>77.4</b> (69.8~81.8)	<b>86.2</b> (81.9~89.6)	<b>93.1</b> (89.7~93.8)	<b>94.6</b> (93.9~∞)
3~5세	<b>41.2</b> (18.2~48.5)	<b>55.9</b> (48.6~64.7)	<b>73.5</b> (64.8~80.4)	<b>87.3</b> (80.5~ 91.0)	<b>94.8</b> (91.1~99.3)	<b>103.9</b> (99.4~115.3)	<b>126.8</b> (115.4~∞)
6~11세	<b>40.3</b> (14.1~49.1)	<b>58.0</b> (49.2~65.7)	<b>73.5</b> (65.8~79.1)	<b>84.7</b> (79.2~93.0)	<b>101.4</b> (93.1~106.4)	<b>111.4</b> (106.5~119.4)	<b>127.4</b> (119.5~∞)
12~14세	<b>42.5</b> (23.9~52.8)	<b>63.2</b> (52.9~69.0)	<b>74.9</b> (69.1~83.7)	<b>92.6</b> (83.8~100.7)	<b>108.9</b> (100.8~116.6)	<b>124.3</b> (116.7~134.9)	<b>145.5</b> (140.0~∞)
15~17세	<b>49.2</b> (26.2~58.9)	<b>68.6</b> (59.0~77.0)	<b>85.5</b> (77.1~94.7)	<b>104.0</b> (94.8~114.3)	<b>124.6</b> (114.4~134.4)	<b>144.3</b> (134.5~154.7)	<b>165.1</b> (154.8~∞)
18~20세	<b>73.6</b> (24.0~80.8)	<b>88.0</b> (80.9~97.3)	<b>106.6</b> (97.4~114.2)	<b>121.9</b> (114.3~129.4)	<b>137.0</b> (129.5~152.6)	<b>168.3</b> (152.7~168.5)	<b>168.7</b> (168.6~∞)

※ 양육자녀 1인 가구 기준

## 나. 의의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09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정확한 통계수치에 근거하여 자녀의 연령과 부모 합산 소득에 따른 양육비를 산정하였고,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산출방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sup>3)</sup> 또한 도시와 농어촌의 산정기준표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하려고 하였고, 최저양육비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3) 2009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양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출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육자녀가 1명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기준표를 작성하되, 양육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이들의 표준양육비 평균에 1.8을, 양육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이들의 표준양육비 평균에 2.2를 곱하여 총 양육비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 3.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가. 개정 경과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후 그 활용실태와 적용 성과를 살펴보고, 2012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새로운 양육비 통계자료를 반영하는 한편, 양육비 산정의 가산, 감산 요소를 구체화하여 보다 적정하고 현실성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2014. 3. 10. 제2기 양육비 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이후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14. 5. 30. 아래와 같이 개정된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다.

[표 4] 2014년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모합산 소득	0 ~199만 원	200만 원 ~ 299만 원	300만 원 ~ 399만 원	400만 원 ~ 499만 원	500만 원 ~ 599만 원	600만 원 ~ 699만 원	700만 원 이상
자녀 나이	평균양육비(₩)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 구간
0세 이상 3세 미만	526,000 20만원~58만9천원	653,000 59만원~70만7천원	761,000 70만8천원~83만3천원	906,000 83만4천원~95만8천원	1,012,000 95만9천원~105만9천원	1,106,000 106만원~131만5천원	1,526,000 131만6천원 이상
3세 이상 6세 미만	490,000 23만9천원~59만7천원	705,000 59만8천원~79만1천원	878,000 79만2천원~94만2천원	1,008,000 94만3천원~112만3천원	1,238,000 112만4천원~128만5천원	1,334,000 128만6천원~154만6천원	1,759,000 154만7천원 이상
6세 이상 12세 미만	533,000 18만5천원~62만원	708,000 62만1천원~80만4천원	902,000 80만5천원~98만원	1,059,000 98만1천원~113만원	1,202,000 113만1천원~128만6천원	1,371,000 128만7천원~163만8천원	1,906,000 163만9천원 이상
12세 이상 15세 미만	604,000 31만3천원~67만9천원	755,000 68만원~85만1천원	947,000 85만2천원~102만1천원	1,095,000 102만2천원~120만원	1,305,000 120만1천원~141만2천원	1,520,000 141만3천원~178만2천원	2,046,000 178만3천원 이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608,000 34만3천원~72만5천원	844,000 72만6천원~97만9천원	1,115,000 98만원~115만9천원	1,204,000 116만원~131만4천원	1,424,000 131만5천원~154만6천원	1,668,000 154만7천원~196만8천원	2,270,000 196만9천원 이상
18세 이상 21세 미만	959,000 31만4천원~107만2천원	1,185,000 107만3천원~124만4천원	1,303,000 124만5천원~133만1천원	1,361,000 133만2천원~154만4천원	1,728,000 154만5천원~185만1천원	1,974,000 185만2천원~209만7천원	2,221,000 209만8천원 이상

※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 나.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특징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쌍방 합

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로 제시함으로써 보다 현실에 맞는 적절한 액수의 양육비 산정이 가능해졌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 가량이 2명의 양육자녀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자녀가 2명인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산출하였고, 도시와 농어촌을 통합한 전국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하나의 산정기준표를 작성하였으며, 자녀 수와 거주지역은 양육비 산정의 가산, 감산 요소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 4.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가. 개정 경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가 2015년에 실시되면서 새로 조사된 양육비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기존 양육비 액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이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16. 12. 23. 제3기 양육비위원회<sup>4)</sup>를 발족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제3기 양육비위원회는 2016. 12. 23.부터 2017. 6. 29.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을 논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성정책연구원이 제시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가구 고소득 구간을 세분화하고 자녀 나이 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7년 양육비산정기준표(안)를 마련하였다.

제3기 양육비위원회는 내부 의견 수렴절차를 마친 후 2017. 10. 20. 위 산정기준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위 설문조사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

4) 내부위원은 법원 측 인사 12명으로, 외부위원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연구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인사 6명으로 각 구성되었다.

후 2017. 11. 17. 아래와 같이 개정된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최종 확정하여 공표하였다.

[표 5]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모합산 소득 (세전)	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만 원 이상
	199만 원	299만 원	399만 원	499만 원	599만 원	699만 원	799만 원	899만 원	
자녀 만 나이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0~2세	532,000 219,000~592,000	653,000 593,000~735,000	818,000 736,000~883,000	948,000 884,000~1,026,000	1,105,000 1,027,000~1,199,000	1,294,000 1,120,000~1,341,000	1,388,000 1,342,000~1,487,000	1,587,000 1,488,000~1,670,000	1,753,000 이상
3~5세	546,000 223,000~639,000	732,000 640,000~814,000	896,000 815,000~974,000	1,053,000 975,000~1,121,000	1,189,000 1,122,000~1,284,000	1,379,000 1,285,000~1,477,000	1,576,000 1,478,000~1,654,000	1,732,000 1,655,000~1,828,000	1,924,000 이상
6~11세	623,000 244,000~699,000	776,000 700,000~864,000	952,000 865,000~1,044,000	1,136,000 1,045,000~1,219,000	1,302,000 1,220,000~1,408,000	1,514,000 1,409,000~1,559,000	1,605,000 1,560,000~1,717,000	1,830,000 1,718,000~1,997,000	2,164,000 이상
12~14세	629,000 246,000~701,000	774,000 702,000~884,000	995,000 885,000~1,107,000	1,220,000 1,108,000~1,303,000	1,386,000 1,304,000~1,484,000	1,582,000 1,485,000~1,650,000	1,718,000 1,651,000~1,797,000	1,876,000 1,798,000~2,143,000	2,411,000 이상
15~18세	678,000 260,000~813,000	948,000 814,000~1,076,000	1,205,000 1,077,000~1,290,000	1,376,000 1,291,000~1,493,000	1,610,000 1,494,000~1,715,000	1,821,000 1,716,000~1,895,000	1,970,000 1,896,000~2,047,000	2,124,000 2,048,000~2,394,000	2,664,000 이상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 나.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특징

### 1)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의 조정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가구의 소득 구간 중 고소득 부분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최고 소득 구간을 7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나, 합의부의 경우 가구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사건이 많고, 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가구 소득 700만 원 이상인 구간을 700 ~ 799만 원, 800 ~ 899만 원, 900만 원 이상으로 세분화하였다.

## 2) 자녀의 나이 구간 조정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민법상 성년에 이르기 전인 19세 미만까지의 양육비만 표시하였다.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자녀의 나이 구간을 15세 이상 18세 미만, 18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분류하여 각 구간의 양육비를 표시하였으나, 18세 이상 21세 미만 구간을 없애고 18세 이상 19세 미만 부분을 15세 이상 18세 미만 구간에 통합하여 15세 이상 19세 미만 구간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민법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 3) 최저양육비 개념의 유지 및 산출방식의 변경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도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마찬가지로 최저양육비의 개념을 유지하였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최저보장수준의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최저양육비를 산출하던 종전의 방식을 변경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을 기초로 최저양육비를 산출하였다.

## 4) 양육비의 증가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출된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의 영향으로 3세 이상 6세 미만의 구간에서는 다른 구간에 비하여 양육비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 5.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가. 논의의 배경

### 1) 새로운 기초 통계자료 및 변화된 사회적 요구 반영 필요성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공표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통계자료가 발표·축적되었고, 물가 및 국민 소득의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의 개선 등의 변화된 사회경제적인 사정들을 반영한 새로운 양육비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다 현

실에 맞는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 의식 제고와 적극적인 권리 행사, 그리고 이에 대한 언론의 조명 등으로 인하여 양육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전보다 높아졌다.

## 2)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분과의 상설화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20년 기준에 비상설 위원회로 발족되었던 양육비 위원회를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 산하 ‘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분과’로 상설화하여 상시적으로 양육비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신설된 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분과는 2020. 6. 법원 내부 커뮤니티인 ‘가사소년재판부커뮤니티’에 소속된 전국 가사사건 담당 법관들을 대상으로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개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① 부모 합산 소득 구간 중 900만 원 이상 구간 및 자녀 나이 구간을 세분화할 필요성 유무, ② 자녀 수 및 거주지역에 따른 별도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필요성 유무에 대한 각 설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그 밖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고정비용이 아닌 백분율로 표시하자는 의견, 양육친의 양육에 대한 육체노동, 정신노동의 가치를 고려하여 비양육친의 분담 비율을 가산하자는 등의 추가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3) 여성가족부의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2020년)’ 발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위와 같이 수렴된 법관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및 ‘2019년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를 토대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2020년)’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여성가족부는 2020. 12. 이를 책자로 발행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위 연구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통계방법, 즉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소비자 조사 방법’과 ‘2019년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를 기초로 한 ‘두당비용 접근법’에 따른 자녀양육비 추정치를 계산한 산정기준표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이 900만 원 이상인 구간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추가하였다. 그 밖에 자녀 나이 구간 역시 6~8세, 9~11세 구간 추가, 양육 자녀 수 및 자녀 거주지역에 따른 각 양육비 통계, 부모 합산 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sup>5)</sup>을 제시하였다.

---

5) 소비자 조사 방법 통계 기초

## 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작업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분과위원회는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작성에 착수하여 2021. 3. 30., 2021. 4. 27., 2021. 10. 6.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 및 이메일을 통해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 작성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2020년)'의 반영 및 활용방법, 기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 등 산정기준 개정에 필요한 여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후 서울가정법원 소속 법관들을 상대로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2021. 11. 5.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sup>6)</sup>를 개최하였고, 위 공청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sup>7)</sup>

① 소득만을 양육비의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양육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재산을 양육비 산정에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② 소득 없는 양육자의 양육비 감면과 관련하여 자녀의 나이에 따른 기준이 마련 되면 좋을 것 같다(특히 단독 양육자로 지정받은 부모 일방이 영유아인 자녀를 양육 하느라 소득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④ 심판 또는 조정과정에서 양육비의 산출과정을 더 명시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도록 하여 당사자들의 양육비 결정 금액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⑤ 양육비 심판 또는 판결에서 장래 양육비의 차등 지급 결정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⑥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동계산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이 되면 이혼하는 부부들

---

6) 서울가정법원 응선당에서 개최된 위 공청회에서는, 서울가정법원 서형주 부장판사가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안 설명'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호중 박사가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필요성 및 의의'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하였고, 수원가정법원 박은진 판사가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공청회 토론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노현선 부장이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청회 토론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북미영 상담위원이 '상담을 통해 본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활용과 논의 사항'이라는 주제로 지정토론을 하였다.

7)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관하여는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향후 연구분과위원회에서 연구 주제로 삼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남겨두었다.



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⑦ 최근 소득의 변동이 있었으나 과거의 소득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인 변동인 것이 명백할 경우 과거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⑧ 민법상 성년이지만 거액의 등록금이나 학원비가 들어가는 대학생 또는 미취업 자녀의 부양료 또는 생활비와 관련하여 이혼 부부간에 협의가 될 필요가 있다.

⑨ 재판상 이혼의 경우 과거 양육비가 대폭 감액되어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 양육비 청구도 장래 양육비 청구와 다를 바 없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법원이 세심하게 과거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였으면 한다.

### Ⅲ.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표 6]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모합산 소득	0~199만 원	200~299만 원	300~399만 원	400~499만 원	500~599만 원	600~699만 원	700~799만 원	800~899만 원	900~999만 원	1,000~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자녀 만 나이											
0~2세	621,000 264,000~686,000	752,000 687,000~848,000	945,000 849,000~1,021,000	1,098,000 1,022,000~1,171,000	1,245,000 1,172,000~1,323,000	1,401,000 1,324,000~1,491,000	1,582,000 1,492,000~1,685,000	1,789,000 1,686,000~1,893,000	1,997,000 1,894,000~2,046,000	2,095,000 2,047,000~2,151,000	2,207,000 2,152,000 이상
3~5세	631,000 268,000~695,000	759,000 696,000~854,000	949,000 855,000~1,031,000	1,113,000 1,032,000~1,189,000	1,266,000 1,190,000~1,344,000	1,422,000 1,345,000~1,510,000	1,598,000 1,511,000~1,702,000	1,807,000 1,703,000~1,912,000	2,017,000 1,913,000~2,066,000	2,116,000 2,067,000~2,180,000	2,245,000 2,181,000 이상
6~8세	648,000 272,000~707,000	767,000 708,000~863,000	959,000 864,000~1,049,000	1,140,000 1,050,000~1,216,000	1,292,000 1,217,000~1,385,000	1,479,000 1,386,000~1,546,000	1,614,000 1,547,000~1,732,000	1,850,000 1,733,000~1,957,000	2,065,000 1,958,000~2,101,000	2,137,000 2,102,000~2,224,000	2,312,000 2,225,000 이상
9~11세	667,000 281,000~724,000	782,000 725,000~885,000	988,000 886,000~1,075,000	1,163,000 1,076,000~1,240,000	1,318,000 1,241,000~1,406,000	1,494,000 1,407,000~1,562,000	1,630,000 1,563,000~1,758,000	1,887,000 1,759,000~2,012,000	2,137,000 2,013,000~2,158,000	2,180,000 2,159,000~2,292,000	2,405,000 2,293,000 이상
12~14세	679,000 295,000~734,000	790,000 735,000~894,000	998,000 895,000~1,139,000	1,280,000 1,140,000~1,351,000	1,423,000 1,352,000~1,510,000	1,598,000 1,511,000~1,654,000	1,711,000 1,655,000~1,847,000	1,984,000 1,848,000~2,071,000	2,159,000 2,072,000~2,191,000	2,223,000 2,192,000~2,349,000	2,476,000 2,350,000 이상
15~18세	703,000 319,000~830,000	957,000 831,000~1,092,000	1,227,000 1,093,000~1,314,000	1,402,000 1,315,000~1,503,000	1,604,000 1,504,000~1,699,000	1,794,000 1,700,000~1,879,000	1,964,000 1,880,000~2,063,000	2,163,000 2,064,000~2,204,000	2,246,000 2,205,000~2,393,000	2,540,000 2,394,000~2,711,000	2,883,000 2,712,000 이상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표 6-1]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비율)<sup>8)</sup>

부모합산 소득	0~199만 원	200~299만 원	300~399만 원	400~499만 원	500~599만 원	600~699만 원	700~799만 원	800~899만 원	900~999만 원	1,000~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자녀 만 나이											
0~2세	41.4	30.1	27.0	24.4	22.6	21.6	21.3	21.0	21.0	19.0	17.0
3~5세	42.0	30.4	27.1	24.7	23.0	21.9	21.3	21.3	21.2	19.2	17.3
6~8세	43.2	30.7	27.4	25.3	23.5	22.8	21.5	21.8	21.7	19.4	17.8
9~11세	44.5	31.3	28.2	25.8	24.0	23.0	21.7	22.2	22.5	19.8	18.5
12~14세	45.3	31.6	28.5	28.4	25.9	24.6	22.8	23.3	22.7	20.2	19.1
15~18세	46.9	38.3	35.0	31.2	29.2	27.6	26.2	25.4	23.6	23.1	22.2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8) [표6]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각 평균양육비를 분자로 하고, 해당 구간의 가구소득의 중간 값을 분모로 하여 계산함. 다만 0~199만 원은 150만 원을 분모로 하고, 1,200만 원 이상은 1,300만 원을 분모로 하였음.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반올림.

## 1.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부모가 합의에 따라 그와 같은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양육비를 결정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할 때에도 이를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 중 필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 2. 표준양육비 산정의 기초자료

### 가.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및 2019년 가계동향 조사(분기자료)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이므로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 및 교육비, 의료비, 여가활동비 등 다양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양육비는 부모가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자녀 양육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지원, 직장에서의 지원 등이 부모에게 제공되어 부모가 지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다 합리적인 표준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이를 목표로 한 양육비 지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표준양육비 산정을 목표로 한 별도의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관계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0년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sup>9)</sup> 및 통계청이 실시한 ‘2019년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sup>10)</sup>를 재분석하여 실제 가구 소비 지출 중 자녀에게 소비되는 지출 규모(자녀 개인이 소비하는 비용뿐 아니

---

9) 위 조사대상 중 미성년 자녀 또는 18-20세 자녀 중 비취업상태인 미혼자녀가 있는 9,656가구(자녀 수 17,224명)를 표본으로 하였다.

10) 위 조사대상 중 미성년 자녀 또는 18-20세 자녀 중 비취업상태인 미혼자녀가 있는 5,113가구를 표본으로 하였다.

라 가구 구성원으로서 공동으로 소비하는 비용도 포함<sup>11)</sup>)를 추산하였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양육비는 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자녀 1인에 대한 전국 월평균 양육비(양육자녀 2인인 4인 가족 기준)이다.

## 나. 2020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및 지급기준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제1, 2기 양육비위원회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인 최저생계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뜻하는 최저양육비<sup>12)</sup>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sup>13)</sup>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뜻하는 최저보장수준의 개념이 도입되고, 이에 따라 2015. 7.경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급여의 종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게 최저보장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제3기 양육비위원회는 최저양육비의 개념은 유지하되, 그 산정방식을 최저생계비가 아닌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이번 양육비위원회도 이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11)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자녀개인의 양육비 항목별(미취학아동 기관 이용료,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의복, 분유, 장난감 등의 기타 비용 등) 지출액의 합에, 가구 총 지출액에서 자녀개인별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체 가구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1인당 공동지출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자녀양육비를 산정하였고, 2019년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는 지출항목을 성인지출항목, 자녀지출항목, 공통지출항목을 구분한 후 성인지출항목은 제외하고 자녀지출항목은 자녀 수로, 공통지출항목은 가구원 수로 나눈 뒤 합산하여 자녀 1인당 지출비용을 산정하였다.

12) 제1기 양육비위원회에서는 최저생계비에 성인균등화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저양육비를 산출하였고, 제2기 양육비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적용하였다.

1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표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제6조).

구체적으로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산출된 2020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및 지급기준<sup>14)</sup>상 2인 이상의 가구에서 가구원이 1인씩 증가할 때마다 급여가 263,579원씩 증가되는 점에 착안하여, 최저소득 구간에서 가장 양육비가 낮은 나이 구간의 최저양육비를 264,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여기에 나이 구간별 평균상승률을 고려하여 각 나이 구간의 최저양육비를 산정하였다.

### 3.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달라진 사항

#### 가.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의 조정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부모 합산 소득 구간 중 최고 소득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최고 소득 구간을 9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나, 합의부 사건의 경우 가구 소득이 9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다수 있고, 9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가구 소득 900만 원 이상인 구간을 900~999만 원, 1,000~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 구간으로 세분화하였다.

#### 나. 자녀의 나이 구간 조정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을 6세 이상 8세 이하, 9세 이상 11세 이하로 세분화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은 사교육비, 돌봄비용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양육비를 산출하기 위함이다.

14)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에 따르면, 2020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및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한다. 가구원수에 따른 2020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및 지급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와 같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및 지급기준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 다.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표의 추가

각 가구 소득 구간에서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비율로 표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sup>15)</sup>

#### 라. 양육비의 증가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어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하였다.

#### 마. 가산·감산 요소의 수정

가산·감산 요소 중 고액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예를 추가하였다.

가산·감산 요소 중 고액의 교육비와 관련하여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이외에도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고액의 교육비’도 가산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 4.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 가. 가구의 소득 구간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분류하였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포함한다.

---

15) 2020년 가사소년재판부커뮤니티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를 백분율로 표시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일부 있어 양육비 비율표를 추가하였다. 다만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 및 여러 가산·감산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부모 합산 소득에 위 양육비 비율표의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획일적으로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위 양육비 비율표는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의 경향성을 확인하는 정도의 자료로만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표준양육비뿐 아니라, 각 소득 구간의 표준양육비의 구간평균값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양육비 구간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 구간의 표준양육비를 일률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부모 합산 소득의 액수에 따라 양육비 구간 내의 적절한 금액을 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 부모 일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 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sup>16)</sup>

## 나. 자녀의 나이 구간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구간을 분류하였는데, 대체로 미취학(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령과 유사하다. 이는 각 학교의 학령에 따라 지출되는 교육비 등이 다름에 근거한 것이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자녀 나이 구간을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예를 들어 2세 마지막 날까지는 ‘0~2세’ 구간을, 3세가 시작되는 날부터는 ‘3~5세’ 구간을 적용한다.

## 다. 양육자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녀 1인당 양육비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통계자료상 표본 가구 중 양육자녀가 2인인 가구의 비율이 절반 이상인 58%<sup>17)</sup>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양육자녀 2인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산정하고, 양육자녀의 수에 따른 가감산 계수를 추가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양육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위 산정기준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1인인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양육비에 가산계수 1.065(2017년 1.201),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계수 0.783(2017년 0.776)을 각 적용하여 양육비를 산출할 수 있다.

16) 자세한 내용은 ‘IV. 2. 마. 부모 일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 참고

17) 위 통계자료에 따르면, 표본 가구 중 양육자녀가 1인인 가구 비율이 29.1%, 양육자녀가 2인인 가구 비율이 58%, 양육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비율이 12.9%를 차지한다.

## 라. 최저양육비

최저양육비는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각 자녀 나이 구간에 따른 부모 합산 소득 199만 원 미만의 양육비 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이다. 따라서 부모가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위 최저양육비를 기초로 최소한으로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 마. 가산·감산 요소의 확정

표준양육비를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① 부모의 재산 상황, ②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③ 자녀 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④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가 드는 경우, ⑤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교습비 등)가 드는 경우(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인 경우), ⑥ 부모의 일방이 개인회생절차에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양육비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각 가산·감산 요소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방법에 관하여는 아래 5.항에서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 5. 가산·감산 요소

### 가. 재산상황

자녀의 양육비를 정함에 있어 부모의 재산상황은 반드시 참작되어야 할 요소이다. 부모의 재산상황을 고려할 때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양육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가산·감산 요소로 보아 양육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나. 자녀 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통계자료 표본의 절반을 넘는 가구가 양육자녀 2인인 점을 고려하여 양육자녀 2인 가구의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삼았으



므로, 자녀의 수가 이와 달라지는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산정시 가산 또는 감산 절차가 필요하다.

양육자녀 수별 평균 양육비 차이에 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표준양육비를 1로 보았을 때, 양육자녀가 1인인 경우는 1.065, 3인 이상인 경우는 0.783의 비율을 각 적용하여 양육비를 산출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다. 자녀의 거주지역**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거주지역이 도시인지 농어촌인지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산정기준표로 작성하여 공표하되, 자녀의 거주지역이라는 개별 요소를 양육비의 가산·감산 요소로 적시하였다.

지역별 평균 양육비 차이에 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표준양육비를 1로 보았을 때, 자녀의 거주지역이 도시인 경우는 1.079, 농어촌인 경우는 0.835의 비율을 적용하여 양육비를 일응 산출할 수 있는데, 거주지역을 도시와 농어촌으로 단순화한 위 가감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자녀의 거주지역의 물가 등 경제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드러난다면, 이를 기초로 양육비를 가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라.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양육비 심리를 통하여 자녀에게 중증 질환 또는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됨이 입증되는 경우 이를 양육비 가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 **마.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인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통상적인 교육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양육비의 가산을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 전에 통상적인 교육비를 초과하는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양육비 가산 요소로 삼을 수 있다. 이혼을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받은 부모 일방이 비양육친의 동의 없이 고액의 교육비, 예컨대 외국 유학비

나 예체능 등 특기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거나 지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교육이 자녀의 적성과 재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양육비 가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 바. 비양육자의 개인희생

비양육자가 희생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희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를 양육비 산정시 감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양육비가 비양육자의 상황에 비추어 과도하여 이를 그대로 희생채권으로 삼을 경우 희생계획인가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희생절차 전체가 폐지된다면, 이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양육자에게 불이익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 사정을 양육비 산정의 감산 요소로 삼을 것인지 여부는 희생계획안의 내용, 비양육자의 재산 및 채무 현황,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희생절차가 종료된 시기부터는 앞서와 같이 감산된 부분을 전보하기 위하여 희생절차 중 양육비를 감산한 사정을 양육비 가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sup>18)</sup>

## 사. 기타

그 외에도 다양한 가산·감산 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요소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18)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비양육자가 희생절차 중일 때 조정시점부터 희생기간까지는 기준보다 금액, 그 후는 기준보다 증액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성립한 사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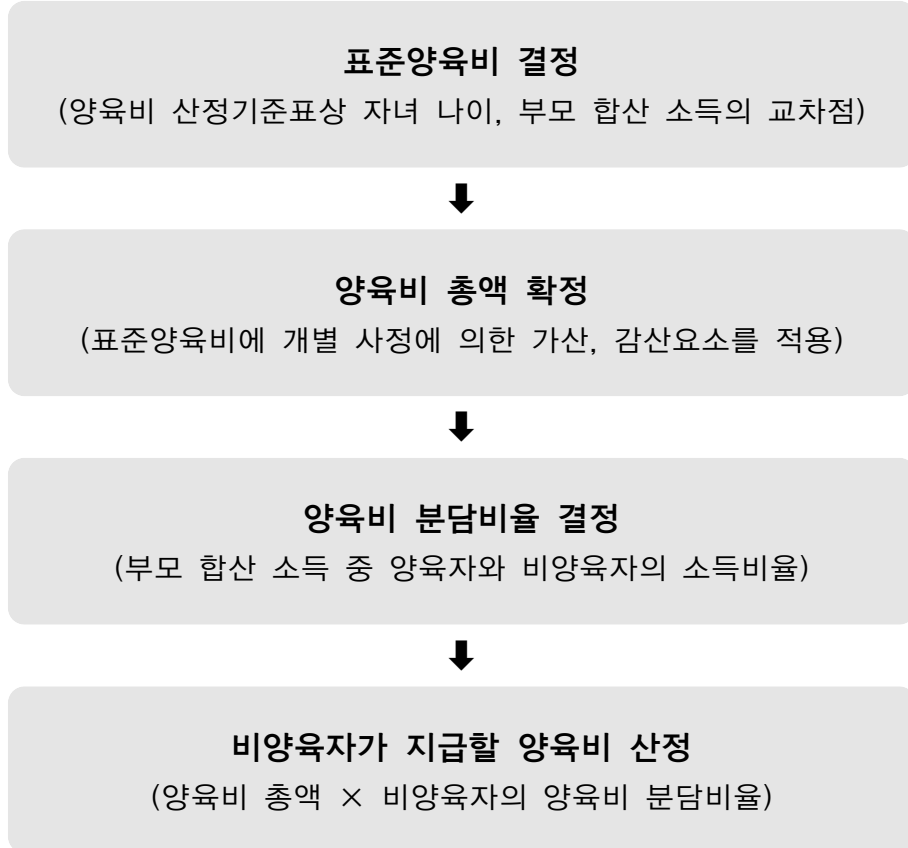
1. 피고는 원고에게 20xx. xx. xx.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매월 5일에 지급한다.

가. 20xx. xx. xx.부터 20xx. xx. xx.(희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 사건본인 1인당 20만 원(합계 40만 원),

나. 20xx. xx. xx. 이후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합계 100만 원)

## IV. 양육비 산정기준표 사용법

### 1. 양육비 산정절차 흐름도



### 2. 양육비 산정 방법

#### 가. 표준양육비 결정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각 자녀에 상응하는 나이 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가로축)의 교차점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이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 자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낸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순수입 총액으로서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어 양육자녀 2인 중 1인의 나이가 7세이며, 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월 150만 원(세전), 비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세전), 임대수입이 월 100만 원(세전)인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에서 6~8세 구간을, 가로축에서 400~499만 원 구간(=15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을 적용하여 자녀 나이 구간과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의 교차점인 105,000~121,600원의 범위에서 표준양육비를 정한다.

[표 7]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한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부모합산 소득	0~ 199만 원	200~ 299만 원	300~ 399만 원	400~ 499만 원	500~ 599만 원	600~ 699만 원	700~ 799만 원	800~ 899만 원	900~ 999만 원	1,000~ 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0~2세	621,000 264,000~ 686,000	752,000 687,000~ 848,000	945,000 849,000~ 1,021,000	1,098,000 1,022,000~ 1,171,000	1,245,000 1,172,000~ 1,323,000	1,401,000 1,324,000~ 1,491,000	1,582,000 1,492,000~ 1,685,000	1,789,000 1,686,000~ 1,893,000	1,997,000 1,894,000~ 2,046,000	2,095,000 2,047,000~ 2,151,000	2,207,000 2,152,000 이상
3~5세	631,000 268,000~ 695,000	759,000 696,000~ 854,000	949,000 855,000~ 1,031,000	1,113,000 1,032,000~ 1,189,000	1,266,000 1,190,000~ 1,344,000	1,422,000 1,345,000~ 1,510,000	1,598,000 1,511,000~ 1,702,000	1,807,000 1,703,000~ 1,912,000	2,017,000 1,913,000~ 2,066,000	2,116,000 2,067,000~ 2,180,000	2,245,000 2,181,000 이상
6~8세	648,000 272,000~ 707,000	767,000 708,000~ 863,000	959,000 864,000~ 1,049,000	1,140,000 1,050,000~ 1,216,000	1,292,000 1,217,000~ 1,385,000	1,479,000 1,386,000~ 1,546,000	1,614,000 1,547,000~ 1,732,000	1,850,000 1,733,000~ 1,957,000	2,065,000 1,958,000~ 2,101,000	2,137,000 2,102,000~ 2,224,000	2,312,000 2,225,000 이상
9~11세	667,000 281,000~ 724,000	782,000 725,000~ 885,000	988,000 886,000~ 1,075,000	1,163,000 1,076,000~ 1,240,000	1,318,000 1,241,000~ 1,406,000	1,494,000 1,407,000~ 1,562,000	1,630,000 1,563,000~ 1,758,000	1,887,000 1,759,000~ 2,012,000	2,137,000 2,013,000~ 2,158,000	2,180,000 2,159,000~ 2,292,000	2,405,000 2,293,000 이상
12~14세	679,000 295,000~ 734,000	790,000 735,000~ 894,000	998,000 895,000~ 1,139,000	1,280,000 1,140,000~ 1,351,000	1,423,000 1,352,000~ 1,510,000	1,598,000 1,511,000~ 1,654,000	1,711,000 1,655,000~ 1,847,000	1,984,000 1,848,000~ 2,071,000	2,159,000 2,072,000~ 2,191,000	2,223,000 2,192,000~ 2,349,000	2,476,000 2,350,000 이상
15~18세	703,000 319,000~ 830,000	957,000 831,000~ 1,092,000	1,227,000 1,093,000~ 1,314,000	1,402,000 1,315,000~ 1,503,000	1,604,000 1,504,000~ 1,699,000	1,794,000 1,700,000~ 1,879,000	1,964,000 1,880,000~ 2,063,000	2,163,000 2,064,000~ 2,204,000	2,246,000 2,205,000~ 2,393,000	2,540,000 2,394,000~ 2,711,000	2,883,000 2,712,000 이상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양육비 구간과 구간 평균값이 제시되어 있다. 양육비 구간 평균값을 표준양육비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일률적으로 구간 평균값을 사용하기보다는 부모 합산 소득의 액수에 따라 양육비 구간 내의 적절한 금액을 표준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구간의 양육

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보다 당해 구간의 최하한값 또는 최상한값을 표준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면에서도 보다 합리적이다.

## 나. 양육비 총액 확정

위와 같이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정하여진 표준양육비에 앞서 본 ① 부모의 재산상황, ② 거주지역, ③ 자녀 수, ④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⑤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 ⑥ 비양육자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예: 개인회생 절차중) 등 여러 가지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관의 재량에 따라 구체적인 양육비 총액을 확정한다.<sup>19)</sup>

## 다.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모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앞에서 든 예시에서는 양육자의 소득이 월 150만 원, 비양육자의 소득이 월 300만 원(근로소득 월 200만 원, 임대수입 월 100만 원)이었으므로, 그 분담비율은 양육자 1/3, 비양육자 2/3이 된다.

## 라.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위 나.항 기재 방법으로 확정된 양육비 총액에 다항 기재 방법으로 정한 양육비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비양육자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최종적으로 산정한다.

## 마. 부모 일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물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득 활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 일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 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부모 일방이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에 수궁할 만한 사정(장애, 중병, 자녀

---

19) 가산·감산 요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Ⅲ. 5. 가산·감산 요소’ 부분 참고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① 중대한 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고, 재산마저 없는 경우라면 양육비의 면제를 고려해 볼 수 있고, ② 자녀를 양육하느라 일시적으로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이지 않거나 이혼 후 비양육친이 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소득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최저 양육비(나이 구간 내 부모 합산 소득 199만 원 이하 구간의 하한)의 1/2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20)</sup>

### 3. 예시

#### 〈사례 1〉

- 가족관계 : 원고, 피고, 만 16세 딸 1인, 만 8세 아들 1인
- 소득(세전) : 1) 원고는 월 150만 원의 근로소득  
                   2) 피고는 월 180만 원의 근로소득, 상속재산으로부터 월 20만 원의 부동산 임대소득
- 양육자 : 원고
- 딸은 매월 40만 원의 치료비가 드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음

#### 가. 표준양육비 결정

- 부모 합산 소득 : 150만 원 + 180만 원 + 20만 원 = 350만 원
- 딸의 표준양육비 : 1,227,000원

자녀나이 15~18세, 부모 합산 소득 300~399만 원의 교차점인 1,093,000 ~ 1,314,000원 구간에 해당, 부모 합산 소득이 350만 원으로 해당 소득 구간 중간에 해당하므로 구간 평균값인 1,227,000원으로 결정

20) 예를 들어 자녀의 나이가 7세이고 부모 일방이 최저 양육비의 1/2을 부담하게 된다면, 그가 부담할 양육비의 하한은 136,000원(= 6~8세 나이 구간 중 양육비 하한인 272,000원 × 1/2)이 되고, 상대방 부모가 부담할 양육비는 확정된 양육비 총액에서 위 최저양육비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 아들의 표준양육비 : 98.8만 원
- 자녀나이 9~11세, 부모 합산 소득 300~399만 원의 교차점인 886,000 ~ 1,075,000원 구간에 해당, 구간 평균값인 988,000원으로 결정
- 자녀들의 표준양육비 총액 :
- 1,227,000원 + 988,000원 = 2,215,000원

### 나.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요소로 딸의 치료비 40만 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 딸의 표준 양육비 중 보건의료비 항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 양육비 총액은 2,615,000원 이하에서 결정될 것이다.

### 다.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모 각자의 소득비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150/350, 피고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200/350이다.

### 라.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피고의 양육비 분담액 2,615,000원 × 200/350 ≒ 1,494,000원 이하  
 피고의 양육비 지급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494,000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으로 법관 재량으로 정한다.

#### 〈사례 2〉

- 가족관계 : 원고, 피고, 만 10세 딸 1인
- 소득 : 1)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하였고, 이혼을 결정하고 구직활동 중
- 2) 피고는 월 평균 200만 원의 세전소득
- 양육자 : 원고

### 가. 표준양육비 결정

- 부모 합산 소득 : 200만 원
- 표준양육비 : 725,000원

자녀나이 9~11세, 부모 합산 소득 200~299만 원의 교차점인 725,000 ~ 885,000원 구간에 해당, 부모 합산 소득이 200만 원으로 해당 소득 구간 중 최소액이므로 구간의 최저값인 725,000원으로 결정

### 나. 양육비 총액 확정

자녀가 1인이라는 가산요소를 고려하여 725,000원 이상에서 양육비가 정하여질 것이다. 앞서 가산요소 항목에서 보았듯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자녀 2인 기준인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를 1로 보았을 때 1.065의 비율로 양육비가 증가하므로, 위 표준양육비에서 약 6.5% 가산한 772,000원 가량에서 양육비가 확정될 것이다.

### 다.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한편 양육자인 원고가 정당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자녀의 최저양육비 281,000만 원의 1/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한다.

### 라.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따라서 피고의 양육비 분담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31,000원{= 772,000원 - (281,000원 × 1/2)} 가량의 금액에서 법관이 재량으로 정한다.



## V.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한계와 적용상 유의사항

### 1.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한계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양육비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 이상 또는 이하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고, 양육자에게 상당한 재산을 분할하는 대신 비양육자의 양육비를 면제하거나, 소액의 양육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양육비의 액수가 양육비 산정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아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양육비 기준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양육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sup>21)</sup>

### 2. 적용상 유의사항

#### 가. 과거 양육비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는 물론, 나아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113 결정 등 참조), 당사자가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양육비 산정기준이 과거 양육비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21) 민법 제837조 제3항은 협의상 이혼 중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양육비 판결, 심판이 이미 있었던 경우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의 적용시점 이전에 판결 또는 심판 등에서 인정된 양육비가, 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양육비보다 적거나 많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 변경이 전혀 없다면 양육비 변경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법원이 당사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미 결정한 양육비가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에 의한 양육비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변경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다. 나이 구간에 따른 양육비 산정 여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나이 구간별로 표준양육비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도 나이 구간별로 양육비를 달리 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현실화되지 아니한 장래의 비용으로서, 물가상승이나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의 수입 및 경제 상황의 변화 등으로 액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 당사자의 의사가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점,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점<sup>22)</sup>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나이 구간별로 양육비에 차등을 둘 것을 구하지 아니함에도 판결을 선고할 때 장래의 양육비의 차등 지급을 미리 정할 필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22) 민법 제837조 제5항 참고



## 2021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분과위원회 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위 원 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형주
간 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여태곤
위 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신정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강효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다감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미림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정익
	서울가정법원 판사	권경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백경현
	서울가정법원 판사	조아라
	서울가정법원 판사	홍영진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선희
	서울가정법원 판사	장서진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021년 12월 인쇄

2021년 12월 발행

| 발행 : 서울 가정 법 원

| 인쇄 : 성 문 인쇄 사

(02.2272.7553)

2021년

#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서울가정법원